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821호, 2012.5.30> 제7조에 따라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p>1. 응시자격</p>	<p>가. 건축사예비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법」 <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p>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3242호, 1980.1.4>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p>※ 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됨 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도 포함됨 ③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함
<p>2. 시험과목</p>	<p>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p>
<p>3.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p>	<p>가. 시험일자 : 2014년 5월 18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14년 4월 30일(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p>
<p>4. 응시원서 접수</p>	<p><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2014. 2. 26(수) 09:00 ~ 3. 5(수) 18:00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p>
<p>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p>	<p>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14년 6월 5일(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 2014. 6. 11 ~ 6. 13 (09:00~18:00) ※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p>
<p>6. 응시자 지참물</p>	<p>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컴퓨터용 수성사인펜</p>
<p>7. 응시자 주의사항</p>	<p>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다.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시 별도 공고합니다. 마.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신호와 시험종료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바.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장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